

第122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附錄)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第122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議事日程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面

1. 第122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議事日程

○ 회 기 : 2002. 6. 25(화), 1일간

○ 의사일정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월 25일 (화)	10:30	○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1.제122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2.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00	○ 개회식 ○ 제1차 본 회의 1.제1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1.안전심사 ○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1.당면 현안사항 회의 등 3.안전처리(조례안 심의) 4.폐 회	

2. 서울特別市鐘路區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6. 2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6월 17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2년 6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12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6. 25)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가. 개정이유

'98년도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1. 7.31 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43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정·현원 관리지침 이첩통보 (서울시 인사 12100-1943, 2002. 6.11)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이유

- '98년부터 추진해온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2002년 7월 31일까지 우리

구 직종별·직급별 초과현원 40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으나

- 정부의 초과현원에 대한 합리적 해소방침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의 직종·직급별 불일치 정원을 한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마련되었고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조례 제437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 검토의견

- 구조조정 마무리 결과 우리 구 공무원 총정원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1,259명이며 현원은 1,285명으로서 26명의 초과현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43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해 정원 외에 별도로 인정되는 휴직자 7명과 파견 6명, 공로연수 16명 등 총 29명이 별도정원으로 확보되거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정원 범위를 초과하는 현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현행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조례 규정상으로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운영한다 하여도 직종·직급별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총정원과 관계없이 초과현원을 2002년 7월 31일까지 면직시키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의 경우는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일치하지 않는 인원이 40명으로서 직종별로는 기능직이 24명, 고용직이 16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예시 : 정원이 7급 10명, 8급 10명이고, 현원이 7급 8명, 8급 12명인 경우 현원이 총 20명으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초과현원은 발생되지 않으나, 직급별 정원에서는 8급에서 2명이 초과되어 있어 직권면직 대상자가 발생됨)
- 행자부의 지침은 이러한 총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운영하면서도 직종·직급별 정원의 불일치로 인하여 2002년 7월 31일자로 면직되어야 하는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달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시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통사안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직종·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여야 함
- 그러나 기관별로 공무원을 직종·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한 것은 업무 기능별로 업무량 등을 감안 소요인력을 산정하여 정원을 정함으로써 업무별로 적정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나 이러한 취지와 어긋나게 직권면직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초과현원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 업무기능별로 업무량에 비해 잉여인력 또는 부족 인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직종과 직급이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
- 다행히 우리 구의 경우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불일치 인원이 발생하

고 있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이들에 대해서도 향후 조직 및 인력진단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직종간 업무량과 비례하는 적정인력을 산정, 정원을 책정하는 등 인력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라.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3항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 대통령령 제17624호)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 제43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①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 제42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

①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 능력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로구 정·현원 현황(2002년 7월 31일 현재)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비 고
정 원	1,259	870	283	15	91	별도정원 29명 미포함
현 원	1,285	854	310	14	107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 천 상 옥 위원, 김 정 대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문) 직종·직급별 정원제와 총 정원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 예를 들어, 직급별 정원제로 하면 현원이 모자라는 직급은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으나 현원이 남는 직급은 남는 인원만큼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총 정원제로 하면 직급을 합하여 총 인원에서

남는 인원만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모자라는 지급에서는 그 부분만큼의 인원이 구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 어떻게 40명에 달하는 초과 현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답) 근본이유는 과거에 파출소에 근무하던 방범원(지도원)이 우리 구로 상당히 많은 수가 이관되어 왔고 검침원도 많은 수가 이관되어 오는 바람에 초과 현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자연 감소 등으로 많이 해소되기는 하였습니다.

문) 2002년 7월 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을 왜 이렇게 급히 6월말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 구조조정 대상 명단을 7월중에 행자부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어 6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정·현원 불일치를 해소토록 행자부에서 통보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그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답) 총 정원 범위 내에서는 일반직과 고용직의 정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기 명예퇴직·공로연수 등의 합리적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